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06호 2016. 9. 19(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224호 경서3구역 환지계획(변경) 수립 및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24호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 환지계획(변경) 수립 및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260호(2012.02.22.)로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에 의한 환지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후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 수립 및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환지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분명등으로 인해 통지서를 미 수령한 경우에는 본 공고내용으로 갈음합니다.

2016. 9.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위치 :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3. 면적 : 368,085m<sup>2</sup>
4.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10. 08. 23. ~ 2019. 08. 23.
6. 총사업비 : 118,571백만원
7. 사업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8. 참고사항

가) 효력발생시기

- 환지(변경)예정지 지정된 일반 토지 : 2016. 09. 19.
- 금전청산 대상 토지 : 2016. 09. 19.

나)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되면 같은법 제36조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환지의 사용 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며,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 수익을 부여합니다.

라)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청산된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 마) 환지(변경)예정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계 및 환지 확정 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시 금전으로 청산(징수 및 교부)합니다.
- 바) 환지(변경)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변경)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동 조례 및 경서3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구청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